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504
빈 호	

제출연월일 : 1999. 9.

제 출 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시본청을 18과에서 17과로 축소조정하고 일부부서의 하부조직인 담당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총무국의 분장사무중 “재난관리계획업무”를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다. 건설국의 분장사무중 “재난관리계획업무”를 신설함(안 제7조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5조제1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민방위 비상대책 및 교육훈련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종 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복구대책 수립·시행

부칙 제3조제24항중 “방제업무담당주사”를 “재난방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②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을 삭제한다

③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총무국장”을 “건설국장”으로,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충무국)①충무국에 충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u>민방위재난관리과</u>를 둔다 ②충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생략) 13.<u>민방위비상대책 및 재난관리계획수립</u>이행 14.(생략)	제5조(충무국)①충무국에 충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충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2.(현행과 같음) 13.<u>민방위비상대책 및 교육·훈련</u> 14.(현행과 같음)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제7조(건설국)①(생략) ②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3.(생략) 4. <u>자연재해의 예방과 방지대책</u>및복구 5.~15.(생략)	제7조(건설국)①(현행과 같음) ②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3.(현행과 같음) 4. <u>각종재난 및 재해의 예방과 복구대책 수립·시행</u> 5.~15.(현행과 같음)	재난관리업무이관
부 칙	부 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u>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u>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u>방재업무담당 주사</u>”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현행과 같음) ④<u>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u>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u>재난방재업무담당 주사</u>”로 한다	담당명칭변경